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5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는 2020년 10월 28일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2월 2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9월 16일에 의결하고, 2021년 10월 22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공고→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 붙임: 1.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 판정의 결서(게재 생략)
2.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4월 29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2. 1.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1. 코팅되지 않은 물품
2.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4월 30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대만	1.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49
	2. 그 밖의 공급자	5.49
태국	3.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1
	4.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9
	5. 그 밖의 공급자	3.68
아랍에미 리트연합	6.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98
	7. 제이비에프(JBF RAK LCC)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95
	8. 그 밖의 공급자	51.48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